

■ 개요

- 매매, 증여, 상속, 축탁, 기타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등은 일정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전국 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사용본거지 관할관청)
- 사업용 자동차(사용본거지 16개 시·도내 관할관청)
- 차고지 신고 대상 자동차(자가용 2.5톤 이상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다만, 관할관청의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는 가능)

■ 이전등록 신청자

- 자동차 양수인
- 자동차 매매업자(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 자동차 양도인(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대리인(위임자의 도장 날인 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수수료 및 취득세, 채권

- 증지 : 1,000원(경남 외 : 1,500원)(양수인 사용본거지 기준)
- 수입인지 : 3,000원

자가용수입인지 수령 여부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O	매매	O
	이사화물	X	증여	O
	부활단순	X	축탁	X
	부활이전	O	상속	X
			합병	X
			기타	O

- 취득세 및 채권 매입 금액은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취득세 : 지방세법
 - 채 권 : 각 시·도 조례
- 이전등록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번호판 대금 및 등록면허세(15,000원)

■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기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사 유	신청기간	증빙(제출)서류	비 고
매 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잔금지급일 기준
증 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변호사 공증 받은 증여증서 등	증여일 기준
상 속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서 등	사망자 기준으로 증빙서류 발급
법인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합병계약서 등	합병등기일 기준
경매 또는 공매	촉탁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매각결정서 등	확정판결일 또는 매각촉탁일 기준
법원판결	확정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등본 등	

※ 단, 2013년 12월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신고

■ 이전등록 미이행에 따른 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3

사 유	종 류	처벌 내용
신청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신청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한 금액 - 신청 지연 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최대금액)
	벌금	정당한 이전신청 지연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고지등록 대상

- 자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차량등록 시, 차고지 신고 후 전국 시·도의 등록관청에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차량등록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및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https://parking.jeju.go.kr/target/check.cs>) 참고

특 수	캠핑카	피견인형	무조건 차고지 필요
		동력있는 차량	총중량 3.5t 초과 필요
	기타특수차량(ex. 이동업무차)	무조건 차고지 필요	
화 물	최대적재량 2.5t 이상 (구조변경을 통해 최대적재량 변경시 최초 제원표 기준)		
승합, 승용	트레일러 등 (캠핑트레일러는 차고지 필요함)	차고지 필요 없음	

■ 압류 해제 및 승계

1.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등록된 압류(2011년 7월 이후 건) 해제
2. 자동차세 완납
3.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 양수인이 알고 이전 가능한 압류(자동차와 관련 없는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압류, 가처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령 질의회신 알림)
-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승소시 소유권 상실등의 위험 부담있음을 안내
- ※ 압류 승계 시 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내용 기재하고 양수인 확인(도장날인 또는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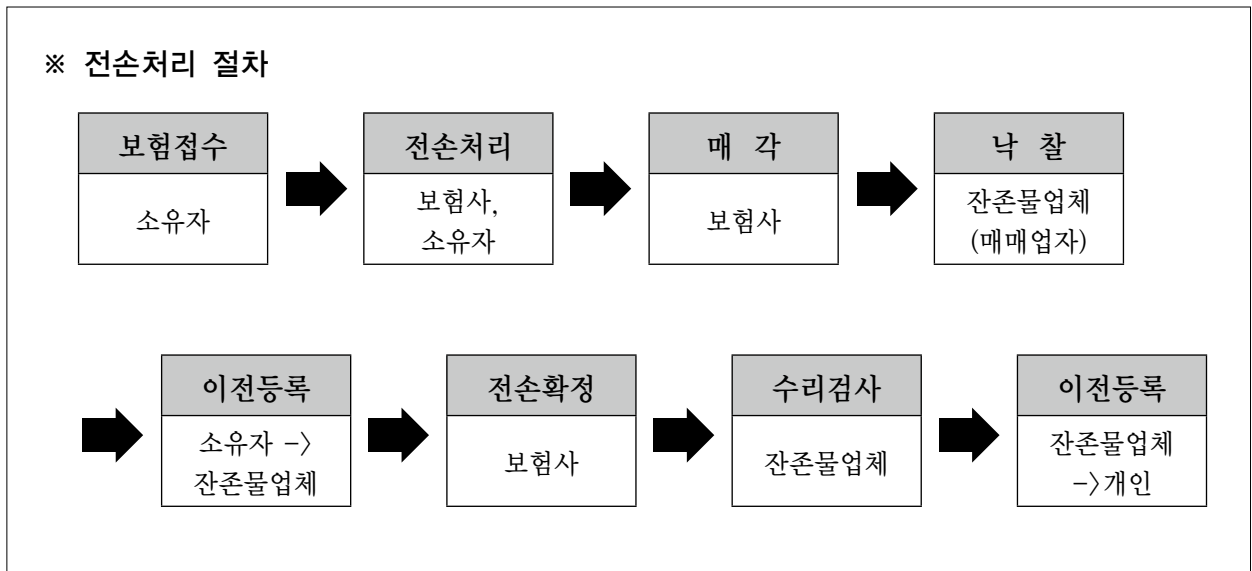
■ 인감증명서 생략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제출 시 (경락확인서 : 자동차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 포함)
- 양도인,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로 양도인이 직접 방문 시

■ 참고사항

- 이전등록 시 지역번호판 → 전국번호판 변경 필수
 - 자동차등록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할관청의 기호 표시가 있는 자가용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국단위 등록번호부여
- 운용·금융리스차량 계약 종료 취득 시
 - 잔금지급일(리스종료확인서 종료일 또는 해지증서 해지일)
- 외국인 이전등록시
 -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시 직접 방문할 경우 양도 가능, 양수 불가
 -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성명과 양도증명서상의 영문성명 일치
 -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성명과 한글이름 병기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산연계 시 한글이름 병기 안되어 있을 경우 한글이름 추가 병기 불가
 - 외국인의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효력 없음(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 전손차량 이전등록(자동차관리법 제12조)



- 2017.2.14.부터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전손처리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검사 실시. 다만, 전손 확정 후 2017.2.13.이전 제3자에게 이미 한번 이전등록된 차량은 구매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수리검사 제외가능